

2. 정부 정책 동향

□ 정책 이슈 : 건설업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법개정

- (개정 내용) 정부는 건설업의 시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建設産業基本法을 개정해 99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방침
 - 시장기능 활성화: 의무 하도급제 폐지,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, 專門 건설업 겸업 허용
 - 구조조정 촉진: 한계 건설업체 퇴출 유도
 - 물량 부족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에게 비용절감을 위한 시공상의 자율성을 확보해주되 건설업체의 추가적인 부실을 방지하겠다 것이 정책의 목적임

<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>

| 항 목 | 내 용 |
|--------------|---|
| 건설 진입 제한 완화 | -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· 5년마다 갱신 부담 경감 · 전국 2만 9,473개 건설업체 혜택 |
| 의무 하도급제 폐지 | - 1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도급 금액의 20%, 15억 원 이상은 30%를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한 규정 폐지 · 일반 건설업자가 도급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하도급 여부와 범위 결정 |
| 전문 건설업 겸업 허용 | - 30개 업종 가운데 5개까지만 겸업할 수 있도록 한 규정 폐지 · 전문건설업자 능력에 따라 다양한 영업 활동 가능 |
| 한계 건설업 퇴출 유도 | - 부도업체는 입찰, 건설 보증에서 제외 |

- (보완과제)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건설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함
 -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설계 겸업도 허용되어야 함
→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은 시공 능력보다는 설계 능력을 강화해야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, 해외 수주 확대 및 외국업체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비할 수 있음
 - 올해 들어 수주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 규제 완화로 과당경쟁 현상이 나타날 소지가 있음. 따라서 입찰시 시공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함

(정 반 석 bsjung@hri.co.kr ☎724-4045)

□ 정부 정책 동향 (11. 16~11. 22)

| | |
|---|---|
| <p>금융감독위원회(11.22): 總負債限度管理制와 주거 래은행 제도 도입·추진 발표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총부채 한도 관리제: 한 기업체의 여신과 유가증권발 행 규모를 미리 설정, 이 한도내에서 부채 관리 - 주거래은행 제도를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적용토록 거래관행 개선 |
| <p>공정거래위원회(11.22):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방안 마련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로 철강산업에 대한 진입 제한 폐지 - 포항제철 민영화(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분리) - 포항제철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, 채무보증이나 부당내부거래를 규제 |
| <p>통계청(11.20): 3분기 가계소득·소비지출 사상 최대폭 감소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분기중 도시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 작년 동기비 20.0% 감소, 실질 소비지출 22.3% 감소 - 명목 소득과 명목 소비지출은 각각 14.4%, 16.8% 감소 |
| <p>금융감독위원회(11.19): 종합무역상사 CP 보유한 도 확대 검토중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별종목당 1%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투신사·은행 신탁재산 CP 보유한도를 종합상사에 한해 2%까지 제 한적인 범위내에서 확대 방침 |
| <p>건설교통부(11.18):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3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도개선 시안이 발표되는 25일부터 3년간 개발제한 구역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- 허가 대상은 주거·미지정지역 각각 270m², 사업·녹 지지역 각각 330m², 공업지역 990m² 초과 |
| <p>공정거래위원회(11.18): 分社制度 적극 지원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분 30% 넘어도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고 별도 회사로 인정 - 分社 會社에 대한 모기업 지원 내부거래 적용안해 |
| <p>공정거래위원회(11.17): 강도높은 구조조정 촉진대 책 발표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당거래 혐의 인지시 수사조사, 출자에 의한 부당지 원행위 근절,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·보완 등 부당내부거래 조사 강화 - 2000년 3월말까지 해소 계획 제출 및 분기별 점검, 채 무보증 상위 3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 채무보증 조기 해소 |
| <p>정부(11.16): IMF와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방안 합의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구조조정에 소극적인 경우 공적자금지원 불가 -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를 2000년부터 정식 도입 -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2000년부터 총자본금의 25%로 축소 - 거액여신 총액한도를 2000년 3월말까지 총자본금의 500%로 규제 |

(민 주 흥 jhmin@hri.co.kr ☎724-4014)